

온라인투표 관련 주요 제한 · 금지행위 안내

I 사위투표 등 금지

1 관계 법 · 규정 요약

■ **사위투표죄**[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이라 함) §64, 회장선거관리규정(이하 ‘규정’이라 함) §27]

○ 주 체 : 누구든지

○ 금지기간 : 언제든지

○ 금지행위

▶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 행위

➡ 벌칙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▶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· 직원 ·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위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

➡ 벌칙 : 3년 이하의 징역

■ **비밀투표**(규정 §36)

○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함.

2 주요 위반행위

-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하는 행위
- 선거인의 온라인 투표를 대리하는 행위
- 선거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받은 개인URL(인터넷 주소),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대리투표하게 하는 행위
- 선거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려주는 행위
-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

II

선거일 선거운동 금지

1 관계 법·규정 요약

■ 선거운동기간[규정 §19]

-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(2020. 12. 30.~ 2021. 1. 17.)를 말함.
- 예 외 : 선거일(2021. 1. 18.) 당일 개최하는 후보자 소견발표
 - ▶ 시청시간 : 2021. 1. 18.(월) 0시 ~ 18시
 - ▶ 시청방법 :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 접속
(<https://pis2.sports.or.kr/election/>)

■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(규정 §21, 22, 시행세칙 §11)

- 후보자, 선거사무장(원)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- 선거운동의 방법

주 체	후보자	선거사무장(원)
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선거사무소 게시 간판·현판·현수막· 선거공보· 전화(문자메시지 포함), 정보통신망(SNS 포함)· 윗옷 및 어깨띠, 명함· 정책토론회(선거운영위원회 주최)· 토론회(선거운영위원회 이외 단체 주최)· 선거일 소견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전화(문자메시지 포함)· 정보통신망(SNS 포함)· 윗옷 및 어깨띠· 명함

2 주요 위반행위

- 선거일에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(선거일 개최하는 후보자 소견발표 제외)
 - ※ 선거일에 “이번 선거에 기호 ○번으로 출마했으니, 잘 부탁드립니다”, “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.”라는 등 지지·선전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
-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
 - ※ 다만,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위와 같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

Ⅲ

선거 관련 금품 제공 및 수령 금지

1 관계 법·규정 요약

■ 기부행위 금지(법 §32, §33, §34, §35①~④, 규정 §29)

○ 금지행위

- 후보자 등이 **선거인**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. 이하 같음)이나 그 **가족**(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. 이하 같음), **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**
- 누구든지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

○ 벌칙 및 과태료

- 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§59)
- (과태료)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, 상한은 3천만원(법 §68③)

■ 매수 및 이해유도죄(법 §58, 규정 §23)

○ 금지행위

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-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**금전·물품·향응**이나 그 밖의 **재산상 이익**이나 **공사의 직**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- 금품제공 등을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하거나 **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**

○ 벌칙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2 주요 위반행위

-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체육회의 직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
- 선거인이 금품 등을 받고 온라인투표에 필요한 개인URL(인터넷 주소), 인증번호를 제공하는 행위
-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투표에 필요한 개인URL(인터넷 주소), 인증번호를 제공받는 행위

IV

신고포상금 지급 및 위반행위 신고자 등 보호

■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(법 §76)

○ 지급기준

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

○ 포상금액 : 최고 1억원

■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(법 §75)

○ 적용대상

위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·진정·고소·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, 진술 또는 증언,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○ 신원보호 범위

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에 따라 불이익처우 금지 및 신원 보호 등

○ 벌칙 : 신고자 인적사항 등 공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■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(법 §68③ 단서)

후보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·물품(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)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

■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공정선거지원센터로 신고

☎ 연락처 : 070-4221-7604, 7614

■ 온라인투표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

☎ 연락처 : 031-259-4816, 4817, 4819, 4820